

제340회 경상북도의회제차장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 6. 19.(월)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실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박승직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박승직·최병준·한창화·박순범·이우청·백순창·
남진복·황재철·김창기·허 복 의원(10명)

2. 제안이유

- 도내 산불이 발생 할 경우 산림지역 수목의 피해뿐만 아니라 산림인접지역의 주택, 축사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함 (안 제4조)
- 도지사는 임야화재 조심 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내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산림인접지역에 30m 간격의 안전공지 조성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5조, 제40조, 제42조
- 「소방기본법」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 「산림보호법」 제3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불임
- 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 불임
- 해당부서 검토의견 : 불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 불임

6.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2023. 6. 2. ~ 6. 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53호
- 의견제출: 의견 없음

7. 검토의견

가. 조례제정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건조한 날이 늘어나고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시 수목 뿐 아니라 산림인접 지역의 주택 및 시설물에도 적지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림인접지역의 주민과 주택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제1조, 제2조, 제3조는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제4조, 제5조는 산림인접지역의 주민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임야화재 조심 기간(당해 11월1일부터 다음 해 5월31일) 중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권고 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제6조, 제7조는 도지사가 산림인접시설물의 관계인에게 안전공지¹⁾ 조성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재대응 훈련을 실시 하도록 규정함.
- 제8조는 도지사가 산림인접지역의 주민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사업 시행으로 안전관리 개선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 제9조는 화재 진압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화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금번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산불 발생시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다소 부족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화재에 쉽게 노출되는데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불로 인한 산림인접지역의 주택, 축사 등 시설물에 대한 열악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 최근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2022년 한해 115건의 산불발생에 재산피해액이 2천4백8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임야는 물론,

1) 안전공지(安全空地)

임야화재로부터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 외벽으로부터 산림경계선 사이 30m이상 간격을 두는 공간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 산림인접지역의 주민과 산림인접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연차별 화재예방 종합계획 수립, 산림인접지역내 관계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안전공지의 조성권고, 교육·훈련,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연구·기술개발, 소화용구 공급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 할 수 있는 점과,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제정 취지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안전공지 조성과 소화용수 확보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인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방활동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경상북도 산불발생 현황 및 피해현황

□ 경상북도 산불발생·피해현황 출처 : 소방본부, 2022,

시·군	화재 (건)	피해면적 (ha)	인명피해(명)			시설물피해 (동)	재산피해 (천원)
			총계	사망	부상		
총계	115	17,408.47	9	0	9	698	240,874,538
포항시	7	0.46					31,050
경주시	11	9.08					334,430
김천시	8	2.05	2		2		621,710
안동시	9	4.71					181,870
구미시	5	0.42	1		1		43,840
영주시	5	21.2					493,070
영천시	6	2.10					99,939
상주시	4	1.18					62,215
문경시	4	19.02					717,030
경산시	2	0.17					9,707
군위군	6	226.72				1	1,999,148
의성군	3	9.50	1		1		368,163
청송군	4	0.71					43,897
영양군	4	1.35					238,303
영덕군	9	411.22					20,035,612
청도군	1	0.06					9,180
고령군	6	12.06	1		1		377,560
성주군	6	16.97					439,510
칠곡군	1	0.10					1,846
예천군	1	0.10					12,690
봉화군	10	138.06	4		4	6	1,260,887
울진군	3	16,531.23				691	213,492,881
울릉군	-	-					-